#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

2015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박종근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박문성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2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5년 5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관련규격 및 자료
- BS: Code of practice for selections, use and maintenance of personal fall protection systems and equipment for use in the workplace
- Singapore WSHA: 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/Hoist
- KOSHA GUIDE C-48-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
- KOSHA GUIDE M-86-2011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~제178조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
-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(제2015 20호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6월 18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, 작업대 상승 중 협착, 근로자의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일반적인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고소작업대"라 함은 작업대, 연장구조물(지브),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.
  - (나) "작업대"라 함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화물을 싣고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.
  - (다) "연장구조물 또는 지브"라 함은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 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(라) "차대"라 함은 작업대의 하부체로서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(마) "안정기"라 함은 아웃트리거 등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
- (바) "운반위치"라 함은 고소작업대가 작업위치로 이동된 상태에서의 작업대 위치를 말한다.
- (사) "전복선"이라 함은 고소작업대가 전복모멘트에 의하여 전도될 수 있는 수직의 기준선을 말한다.
- (아) "정격하중"이라 함은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,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.
- (자) "적재위치"라 함은 연장구조물 및 안정기가 하강 또는 수축되어 있는 고소 작업대의 상태로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종류

- (1) 고소작업대의 무게중심 및 주행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(가)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
    - ① A 그룹: 적재화물 무게중심의 수직 투영이 항상 전복선 안에 있는 고 소작업대
    - ② B 그룹: 적재화물 무게중심의 수직 투영이 전복선 밖에 있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
  - (나)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
    - ① 제1종: 적재위치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
    - ② 제2종: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고소작업대
    - ③ 제3종: 작업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고소작업대

(2)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#### (가)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
차량탑재형은 화물자동차에 지브로 작업대를 연결한 형태로서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(본체)의 운전석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이며 <그림 1>과 같다.



<그림 1>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
# (나) 시저형 고소작업대

작업대가 시저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이며 <그림 2>와 같다.



<그림 2> 시저형 고소작업대

# (다) 자주식 고소작업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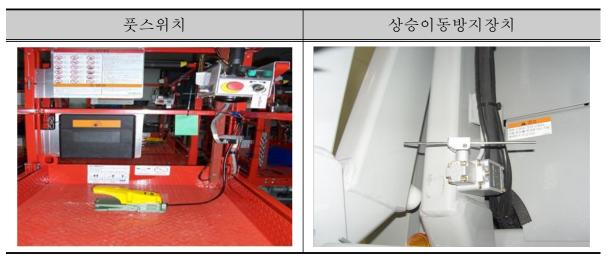
작업대를 연결하는 지브가 굴절되는 형태이며 <그림 3>과 같다.



<그림 3> 자주식 고소작업대

# 5.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

(1) "풋스위치"라 함은 작업대의 바닥 등에 작동발판을 설치하여 비상시 작업자가 발을 떼면 작동이 멈추어 고소작업대의 전복 및 근로자의 협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며, 풋 스위치의 고정여부 및 연결하는 케이블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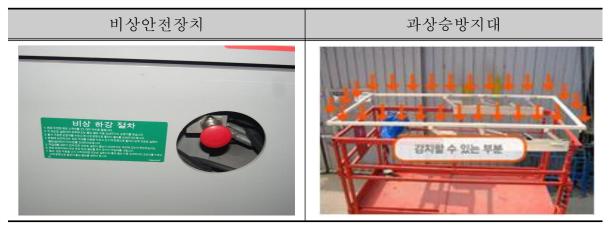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4> 풋스위치 및 상승이동방지장치

(2) "상승이동방지장치(주행차단장치)"라 함은 작업대의 운반위치에서 작업대가

벗어나면 상승을 방지하는 장치이며, 시저 사이에 주행(상승)차단 센서의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(3) "비상안전장치(수동하강밸브)"라 함은 정전시 또는 비상배터리 방전 등의 비상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, 작동상태의 점검 및 작동 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.



<그림 5> 비상안전장치 및 과상승방지대

- (4) "과상승방지대"라 함은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 센서를 부착하여 과상승 방지 센서가 상부 구조물에 접촉시 장비의 상승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이며, 오동작 등의 예방을 위하여 센서의 설치 위치 및 높이와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"비상정지장치"라 함은 각 제어반 및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비상시 작동하여 고소작업대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며,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

<그림 6> 비상정지 및 과부하방지장치

- (6) "과부하방지장치"라 함은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고정위치로부터 작업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며,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"아웃트리거"라 함은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.

# 6.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준수사항

#### 6.1 일반안전사항

- (1)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고소작업대의 종류, 작업의 경로 및 방법, 지면 상태 및 안전장치, 주요 구조부, 와이어로프 등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계획서 내용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kras.kosha.or.kr)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사용 장비는 위험기계·기구의 안전인증 고시 제17조(제작 및 안전기준)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장비의 조작스위치 및 전기장치 표시부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<그림 7> 조작스위치 및 조작방법 표시 사례

- (5)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하고, 안전인증기관(구 검정기관)의 인증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고소작업대 장비의 구조부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, 용접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고소작업대 주요 구조부 변경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대 측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공구 및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9) 고소작업대 지브·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10)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11)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 후에 받침판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6.2 작업 전 점검사항

- (1)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,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학인하고,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,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- (5)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장내 적정 조도(75Lux이상)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6) 조작스위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조작 방지용 안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(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·기계장치 작업)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6.3 작업 중 안전수칙

- (1)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 해제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(2)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안전대 부착 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다.



<그림 8> 안전대 착용의 설치 사례

- (3) 고소작업대의 계획된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4) 연약지반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침하

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아웃트리거는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- (5)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작업대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중량물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경사지에서 작업시에는 차량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,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고소작업대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8)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(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) 또는 제383조(작업 의 제한) 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.
- (9)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.
- (10) 작업 중에 작업대의 안전난간 해체를 금지하고, 탑승 후에 출입문을 고정하여야 한다.



<그림 9> 출입문 사용 사례

(11)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시 불티의 비산방지조치,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, 하부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.

- (12)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(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·기계장치 작업)를 준수하고, 감시인을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13)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- (다) 이동 시 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 후 전도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,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태로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.
- (14) 그 밖의 안전점검내용은 KOSHA GUIDE M-86-2011(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)을 따른다.

#### 6.4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

- (1) 기동 스위치는 뽑아서 작업책임자가 보관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(2) 비탈면은 고임목을 설치하고,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대 내에 자재 또는 기타 공구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.